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42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6.

발의자 : 윤재옥 · 이인선 · 정희용

김기웅 · 최수진 · 김소희

이주영 · 김은혜 · 박성민

김상훈 · 이달희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한 일정 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취득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「종합부동산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를 주고 있음.

그러나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8조의9).

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 세대 1주택자로 본다. ③ · ④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